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280호 2021. 11. 22.(월)

【훈 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325호(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1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39호(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7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0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1-109호(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 2021년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부서(장)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21년 조직개편 사항 정비 - “토지정보과장” → “공간정보과장” 등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 등 ○ 법제처 「2021년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 정비 - “구청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등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325 호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청장”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
무내부 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
무내부 위임 규정” 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용어의 정의)”를“(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원의 총수)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협업 포인트”를 “협업포인트”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토지정보과장”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공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명주소담당”을 “스마트도시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현장규정」에 따라 <u>인천광역시연수구</u>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 ----- ----- ----- -----.
제6조(현장의 개정) <u>구청장</u> 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과 구 공무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의 개정)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 -----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생략)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u>구청장</u>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u>	<u>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u>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제7조(정원의 총수) ①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7조(정원의 총수) 공무직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특별협업포인트’는 연수구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연수구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협업포인트</u> ----- ----- -----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생략) 1. 본청 : <u>토지정보과장</u> 2. (생략) ② (생략)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1. ----- : <u>공간정보과장</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토지정보과장</u> 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공원 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 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도로명주</u> <u>소담당</u> 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 <u>공간정보과장</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스마트</u> <u>도시담당</u>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사무 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2021년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부서(장)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제명 포함) 정비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각호” → “각 호” - “10인이내” → “10명 이내” 등 ○ 법제처 「2021년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약칭 정비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

2021. 11.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39 호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로,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를 “등에 필요”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제93호,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로,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위원회”를 “자체심사위원회”로,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심사 위원회”를 “자체심사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각각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한다.

제3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시”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을 각각 “훈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규칙”을 각각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 등에 필요한 -----.
제2조(사무국장) ① (생략)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제3조(전문위원) ① ~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략)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u>같은법</u> 시행령	제1조(목적) ----- ----- <u>같은 법</u> -----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제93호,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
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 3. (생략)
4.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
부한 자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
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
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2. (생략)

-----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

제2조(위촉직 위원) -----

----- 각 호
----- 인천광
역시 연수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
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
칙」 ----- 따른 자
체심사위원회-----
----- 10명 이내---
-----.

② 자체심사위원회-----

----- 공무원 중-----
-----.

③ 자체심사위원회-----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 ⑤ (생략)	3. <u>그 밖에</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u>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u> 2. ~ 5.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u> 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u>관하여</u> <u>필요</u>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u>필요</u> ----- ----- ----- <u>필요</u>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u>사용</u> 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2조(정의) ----- <u>사용</u> 하는 용어의 뜻은 -----. 1. ~ 5. (현행과 같음)
제35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u> 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시행세칙) ----- ----- <u>필요</u> -----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2조(정의) ----- ----- <u>뜻</u> 은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생략) ②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u> -----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생략)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12조(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

----- 인천광역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제12조(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
----- 해당-----

-----.

② -----

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당
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
계획의 수정) ① 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원
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
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
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
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
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
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 구청장
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

----- 해
당-----

-----.

제14조(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
계획의 수정) ① -----

----- 각 호-----

-----.

1. 해당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

----- 해당-----

-----.

② -----
각 호-----.

1. 해당-----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 -----

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u>각호</u>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u>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당해연도 자체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 4. (생략)	----- <u>각 호</u>----- -----.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의 요청 등) ① ----- ----- ----- <u>각 호</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u> ----- -----. 제25조(기능) ----- <u>각 호</u> -----. 1. <u>해당</u>----- ----- 2. ~ 4. (현행과 같음)
--	--

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현행	개정안
「 <u>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징계 규칙</u>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 ----- -----, -----, -----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 ----- ----- ----- ----- -----.

② <u>규칙</u>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u>훈령</u> ----- ----- -----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규칙</u>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u>훈령</u> ----- ----- ----- ----- ----- -----.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규칙</u>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훈령</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1. 지정취지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출입문(절대보호구역),지하철역 출입구 7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21년 11월 15일

3.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지정대상	개소	지정범위	비고
1	도시공원	2	공원면적 전체	붙임 문서 참조
2	학교출입문 (절대보호구역)	3(5)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	
3	버스정류소	64	정류소 시설물로부터 10미터이내	
4	지하철역 출입구	4	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 1) 향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구역) **소멸 시 자동 금연구역 해제**
2) 향후 금연구역 지정 대상 **명칭 및 관내 위치 변경 시 자동 금연구역 지정**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2년 2월 15일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749-8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 1부.

[붙임]

2021년 금연구역 조사결과 추가지정 대상

○ 도시공원 : 2개소

(2021.9.30.기준)

연번	공원명	위치	면적
1	랜드마크시티1호체육공원	송도동 330-1	189,498.9m ²
2	소리공원	송도동 10-35	11,791.8m ²

○ 학교 출입문(절대보호구역) : 5개소(3개 학교)

(2021.9.30.기준)

연번	구분	학교명	소재지	출입문 개수	비고
1	초등학교	인천송담초등학교	연수구 아카데미로 627 (송도동 320-1)	2	
2	초등학교	인천현송초등학교	연수구 아카데미로 312번길 96 (송도동 399-10)	2	
3	중학교	인천미송중학교	연수구 아카데미로 679 (송도동 308-4)	1	

○ 버스정류소 : 64개소

(2021.9.30.기준)

연번	정류소ID	정류소명칭	동별	비고
1	38037	동춘동중점	동춘2동	쉼터
2	38126	힘찬병원	연수2동	쉼터
3	38312	인명여자고등학교	선학동	쉼터
4	38440	코오롱더프라우	송도2동	쉼터
5	38466	더샵하버뷰(D13)	송도2동	쉼터
6	38496	청학중학교	청학동	쉼터
7	38504	더샵하버뷰14단지	송도2동	쉼터
8	38506	연수역	연수1동	쉼터
9	38507	연수역	연수1동	쉼터
10	38508	미관광장	송도3동	쉼터
11	38511	더샵그린애비뉴	송도2동	쉼터
12	38636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송도5동	쉼터
13	38637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송도5동	쉼터
14	38638	송도파크자이아파트	동춘1동	쉼터
15	38643	e편한세상(109동앞)	송도4동	쉼터
16	38645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203동)	송도4동	쉼터
17	38646	인천대입구역.롯데몰	송도1동	쉼터
18	38648	웰카운티1단지	송도1동	쉼터

19	38649	인천대입구역.롯데몰	송도1동	쉼터
20	38651	송도세브란스병원	송도3동	쉼터
21	38653	미송초등학교(하행)	송도4동	쉼터
22	38654	미송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23	38666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106동)	송도5동	쉼터
24	38667	송담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25	38668	송담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26	38669	송도역	옥련2동	쉼터
27	3867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옥련1동	쉼터
28	38676	인천교회	동춘1동	쉼터
29	38677	송도파크자이아파트정문	동춘1동	쉼터
30	38678	새봄초등학교	동춘1동	쉼터
31	38679	새봄초등학교	동춘1동	쉼터
32	38680	송도동일하이빌파크포레	동춘1동	쉼터
33	38681	이편한세상아파트 301동	동춘1동	쉼터
34	38704	동춘롤러경기장	동춘2동	쉼터
35	38714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후문)	송도5동	쉼터
36	38720	송도타임스페이스	송도1동	쉼터
37	38733	달빛축제공원대공연장	송도2동	쉼터
38	38734	달빛축제공원대공연장	송도2동	쉼터
39	38133	힘찬병원(지도는 양지공원)	연수2동	쉼터
40	38172	용담공원	연수1동	쉼터
41	38646	인천대입구역.롯데몰	송도1동	쉼터
42	38648	웰카운티1단지	송도1동	쉼터
43	38649	인천대입구역.롯데몰	송도1동	쉼터
44	38651	송도세브란스병원	송도3동	쉼터
45	38653	미송초등학교(하행)	송도4동	쉼터
46	38654	미송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47	38666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106동)	송도5동	쉼터
48	38667	송담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49	38668	송담초등학교	송도4동	쉼터
50	38669	송도역	옥련2동	쉼터
51	3867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옥련1동	쉼터
52	38676	인천교회	동춘1동	쉼터
53	38677	송도파크자이아파트정문	동춘1동	쉼터
54	38678	새봄초등학교	동춘1동	쉼터
55	38679	새봄초등학교	동춘1동	쉼터
56	38680	송도동일하이빌파크포레	동춘1동	쉼터
57	38681	이편한세상아파트 301동	동춘1동	쉼터
58	38704	동춘롤러경기장	동춘2동	쉼터
59	38714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후문)	송도5동	쉼터
60	38720	송도타임스페이스	송도1동	쉼터
61	38733	달빛축제공원대공연장	송도2동	쉼터
62	38734	달빛축제공원대공연장	송도2동	쉼터
63	38133	힘찬병원	연수2동	쉼터
64	38172	용담공원	연수1동	쉼터

○ 지하철역 출입구 : 4개소(1개 역사)

(2021.9.30.기준)

연 번	지하철역명	소재지	출입구 개수	출입구 번호
1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40(송도동)	4	①②③④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91호(2009.03.30.), 제2010-260호(2010.09.13.), 제2012-35호(2012.4.16.) 및 제2020-295호(2020.07.20.), 제2021-89호(2021.09.28.)로 고시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26,979.1	증) 5.0	26,984.1	-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26,984.1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979.1	증) 5.0	26,984.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6,979.1	증) 5.0	26,984.1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역 면적증가 26,979.1㎡ → 26,984.1㎡ 증) 5.0㎡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26,979.1	증 5.0	26,984.1	100.0	-
	택 지	23,055.2	-	23,055.2	85.4	-
	공동주택용지	23,055.2	-	23,055.2	85.4	-
	정비기반시설	3,923.9	증 5.0	3,928.9	14.6	-
	도 로	3,552.1	증 10.9	3,563.0	13.2	-
	공 원	371.8	감 5.9	365.9	1.4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다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43	주간선	12,495	신흥동 광1-1	논현동 시계	일반 도로	1972.04.20.	-
기정	중로	3	685	12 (12~15)	집산	168	광3-6	청학동 97-8	일반 도로	1978.12.30.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78	소2-39	소2-3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기정	중로	3	77	12	집산	83	소2-39	소2-32	일반 도로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79	옥련동 557-2	중3-54	일반 도로	1978.12.30.	-
기정	소로	2	32	8~12	국지	194	광3-6	청학동 327-47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기정	소로	2	33	8	국지	58	청학동 98	중3-55	일반 도로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기정	소로	2	39	8 (8~12)	국지	481	중3-4	소2-41	일반 도로	경고제 1978-608호 (1978.12.30.)	-
기정	소로	3	30	6	국지	55	광3-6	소2-32	일반 도로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 폭원의()는 구역 내 도로 폭원임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향나무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연수구 청학동 109-8번지 일대	2,086.7 (371.8)	감) 5.9	2,080.8 (365.9)	1989.11.17.	-

※ 면적의()는 구역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향나무 어린이 공원	- 구역내 향나무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371.8m² → 365.9m² (감 : 5.9m²)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설 치 기 준	비고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6)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 상한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979.1	획지 1	23,05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27.7%이하	250.0% 이하	90m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9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소로2-39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국민주택 (전용 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 - 227.7% = 22.3% - 국민주택 건립용적률 : 22.3% × 30% = 6.69% - 국민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23,055.2 × 6.69% = 1,542.3㎡ 이상 • 국민주택 의무 확보세대 : 29세대 - 1,542.3㎡ ÷ 53.33㎡(공급면적) = 28.9 (29세대 이상 확보)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4% + 지하 주차장계획 10%+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7.7% 이하 ※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 × 3%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 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용)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건설은 법적 상한용적률 250%이하						

○ 변경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법적 상한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984.1	획지 1	23,05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27.7%이하	250.0% 이하	90m이하
		구 분		계획 내용				
		획지 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9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 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소로2-39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개선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국민주택 (전용 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 - 227.7% = 22.3% - 국민주택 건립용적률 : 22.3% × 30% = 6.69% - 국민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23,055.2 × 6.69% = 1,542.3㎡ 이상 - 국민주택 의무 확보세대 : 29세대 1,542.3㎡ ÷ 53.98㎡(공급면적) = 28.6 (29세대 이상 확보)						
완화적용기준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4% + 지하 주차장계획 10%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7.7% 이하 ※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 × 3%(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 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건설은 법적 상한용적률 250%이하						

7)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조망 경관 계획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절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및 효과적인 건축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색채 계획	- 사업시행시 색채계획 수립은 YR, Y계열의 주조색을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준수 - 가로경관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 가로경관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 가로경관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 가로경관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우며 형성할 수 있도록 비텐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가로 경관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 지형적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광고물의 위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광고물의 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1개, 지주형 중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
광고물의 색채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cm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cm 이내, 간판 두께 50cm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나)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30% 이상	○	• 생태면적률 36.65% 확보	• 기존공간형태에서 옥상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내부와 외부 녹지네트워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구 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 지형에 준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준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	• 녹지 구성에 따라 단지내 비오톱 변화	•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식생계획 수립
	생활환경				
생활환경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보행로 조성	•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 동선 조성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일조확보시간 분석결과 전 지점이 일조피해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WNW(서북서풍)	• 녹지공간확보 •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차단 최소화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사용

(표 계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생 활 환경	경관 및 휴식 공간	Skyline보전	○	• 시행 후 근·중거리에서의 일 부 조망이 예상	• 주변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조망권 확보	-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 녹지율이 25% 이상이 요구 되나 현재 조경 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 추후 실시 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이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물순환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	• 우수유출량 : 1.026m³/sec • 토사유출량 : 20.34톤/일	•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절·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환경 성 예 측	수질	필요용수량 급수	○	• 계획급수량 : 277.6m³/일	•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오·우수 적정처리	○	• 계획오수량 : 326.6m³/일	•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 기존 시 오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미미함, 분뇨 발생량 미미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4ton/일, 분뇨 발생량 489.9 l /일	•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연수구조레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소음 · 진동	소음 65dB(A) 진동 65dB(V)	○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시행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교통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 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화재 및 지진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홍수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설치 (송도초등학교 주변 7m) •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
통학로	•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기 결정사항 반영) •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5m)를 설치하여 학교 접근성 및 통학 안전성 확보(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경고등, 가드웬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
-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 국민(임대)주택 확보(29세대)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에 따른 방법

나) 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979.1	택지	23,055.2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37	-	-	37	-	-
변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6,984.1	택지	23,055.2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37	-	-	37	-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항목과 동일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역	위 치		내 용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광로3-6 (비류대로, 대상지 북측)	3m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중로3-4 (비류대로232길, 대상지 남측)	3m	
	중로3-77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남서측)	3m	
	중로3-685 (비류대로244길, 대상지 동측)	3m	
	소로2-32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서측)	3m	
	소로2-39 (청룡로29길, 대상지 남서측)	3m	
	소로3-30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북서측)	3m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3m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주택수급계획(변경)

구분	현황 세대수(세대)			계획 세대수(세대)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433	215	218	650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 추진현황

구분	개발방식	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옥련대진 빌라주변 구역	재개발	8,548.0	23.14	243.92	56.7m 이하	218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2019-156호
송학 등지아파트	재건축	6,809.0	16.204	249.945	83.6m 이하	2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2021-53호
학익4구역	재개발	20,667.0	20.19	298.82	83.55m 이하	567	사업시행인가고시	제2020-115호
주안3구역	재개발	95,786.1	14.74	248.74	81.85m 이하	2,054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2020-26호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내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앴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 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23,055.2	-	23,055.2	청학동 96-4번지 일대	대지
2	371.8	감 5.9	365.9	청학동 615번지 일대	공원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1,061.1	증 10.9	1,072.0	청학동 97-3번지	도로용지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1,243.7	-	1,243.7	옥련동 324-4번지 일대	도로용지
5	342.3	-	342.3	옥련동 324-5번지 일대	도로용지
6	163.1	-	163.1	옥련동 319-5번지 일대	도로용지
7	741.9	-	741.9	옥련동 319-8번지 일대	도로용지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수목현황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구분	수종	규격	수량	이식 가치
1	감나무	3.5H×R10	8	상	12	느티나무	4H×R10	5	하
2	감나무	4H×R12	15	중	13	느티나무	5H×R15	4	상
3	감나무	4.5H×R15	3	상	14	느티나무	3.5H×R12	3	상
4	감나무	5H×R15	6	하	15	측백나무	4H×R15	3	중
5	은행나무	3.5H×R10	20	하	16	향나무	2H×R7	5	하
6	은행나무	4H×R13	15	상	17	향나무	2.5H×R8	5	중
7	은행나무	5H×R18	24	중	18	향나무	3H×R10	3	상
8	은행나무	6H×R22	21	중	19	사철나무	5H×R18	2	중
9	단풍나무	3H×R7	13	상	20	매화나무	4.5H×R16	3	하
10	단풍나무	3.5H×R7	19	중	21	매화나무	5H×R17	4	중
11	단풍나무	4.5×R15	22	중	22	매화나무	5.5H×R18	5	상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상” 54주									

※ 사업지구 내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화양목 등 관목류, 초화류, 화분 식재수 및 경작지 주변의 조림지는 제외

○ 수목활용계획

구 분	수 목 활 용 계 획
현황 분석	•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주, 수령 537년)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향후 계획	• 사업지구내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 보호수를 보호하고자 대상지 남측의 향나무 어린이공원에 보호수를 포함하여 공원조성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